

議案検討報告書

1. 発議 또는 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2. 件 名 :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
3. 案件要旨 : 別添参照
4. 檢討意見 : 別添参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4年 9月 日

運營委員會
専門委員 韓義鉉

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

檢討報告書

1994. 9. .

運營委員會
專門委員會

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

檢討報告書

本條例案은 1994년 8월 17일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4년 8월 19일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案理由

- 改正된 地方自治法과 同法施行令이 施行됨에 따라 地方自治法第32條의2 및 同法施行令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거 地方議會議員의 職務上 死亡, 障碍, 傷害에 대한 補償金 支給 및 節次등에 관한 事項을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여 運營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補償金의 支給對象은 職務로 인한 死亡·障礙·傷害를 입었을때로 하며, “職務”에 대한 認定範圍는 國家에서 정하는 “公務上災害 認定基準”에 준하도록 함(案 第3條)
- 나. 補償金은 死亡의 경우 日費 2年分 相當金額, 障碍의 경우 日費 1年分 相當金額, 傷害의 경우 治療費 全額을 支給하며 重複時 補償金이 높은 경우를 適用하도록 함.(案 第4條)
- 다. 障碍라 함은 公務員年金法施行令에 規定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14等級에 該當될 경우이며, 傷害라 함은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,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함. (案 第5條)

- 라. 補償金은 死亡時는 遺族 그리고 障碍 및 傷害時는 本人이나 代理人이 地方議會 議長을 경유하여 市長에게 書面으로 請求하도록 함.(案 第6條)
- 마. 補償金은 補償審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市長이 決定하여 支給하도록 함.(案 第7條)
- 바. 議員傷害등 補償審議會는 5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, 아래 4人の 委員은 市長이 任命 또는 委嘱도록 함. (案 第9條)
- (1) 議會議員中 1人
(2) 市本廳 關聯 室·局長 1人
(3) 醫務職 公務員 1人
(4) 社會保障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1人
- 사. 審議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, 補償金 請求書가 接受된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審議하고 그 結果를 市長에게 通報하도록 함(案 第13條)
- 아. 市 所屬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등 經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함. (案 第15條)

3. 檢討意見

- 本案件은 地方自治法 第32條의 2 및 同法 施行令 第15條의 2의 規定에 의거 議員의 死亡, 障碍, 傷害時 補償金을 支給 할 수 있도록 具體的인 規定을 만들어 議員의 議政活動時 혹시 發生할 수 있는 사고에 對備도록하여 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遂行을 支援코자 하는 内容입니다.

○ 主要內容을 살펴보면

- 補償金 支給對象은 職務로 인한 死亡 · 障碍 · 傷害를 입었을 경우로 하며 “職務”에 대한 認定範圍는 國家에서 정하는 “公務上 災害 認定基準”에 준하도록 하였고,
 - 補償金 支給基準은 職務上 死亡의 경우 日費의 2年分, 障碍의 경우 日費의 1年分, 傷害의 경우는 治療費 全額으로 하되 障碍時 補償金 支給金額 보다 超過支給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
 - 職務로 인한 死亡 傷害등의 該當與否 및 補償金額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副市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關係者 4名을 任命 또는 委囑하고 補償審議委員會를 構成도록 하여 補償金 支給에 慎重을 기하도록 하려는 内容이 되겠습니다.
- 本案件은 議員의 職務에 대한 認定範圍 및 障碍基準의 適用例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客觀的인 資料에 根據하였으며, 遺族의 範圍를 폭넓게 規定함은 물론 傷害時의 治療日數(준칙: 14일 이상)에 대한 制限期間을 두지 않음으로써 他市·道에 비해 비교적 그 受惠範圍를 擴大適用한 것으로 사료되나, 다만 第4條 第2項의 補償金 支給基準 條項이 施行될 경우 補償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再檢討가 要望됩니다.